

# 전문가 간담회 질의요지

2022. 1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전문가 간담회 질의요지

(2022. 10. 21 / 국회 입법조사처)

##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개 및 주요사업

- [첨부1] 일반현황 참조

## □ 범죄피해자 신변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과 실시 현황

- 최근 3년간 신변과 안전 관련 지원 현황
  - [첨부2] 최근 3년간 신변과 안전관련 지원 현황 참조
- 주거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현황은 범죄피해로 주거를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지원에 추천하여 주거지원을 한 경우임, 이외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이사를 한 경우 실비 지원을 한 것임.
- 재판모니터링은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하고 싶지만 가해자를 보는것에 두려워하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대한 재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것임.
- 법정동행지원은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신변보호를 위하여 동행하여 주는 것임

## □ 검찰청과의 사업 외에 경찰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여부 및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 감소에 대한 실태

- 피해자의 점점인 경찰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가 원활하며 사건 초기 각 경찰서에서 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음
-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자지원에 대해 센터에 의뢰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청과 협업하고 있음. (불송치 사건의 별 영향은 없음)

## □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

- 국가 구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부분은 피해자지원센터 심의회와 검찰의 경제적지원 심의회 이원화를 민간단체 특성상 장기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피해자지원센터로 다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구조금은 명문화 되어 있으나 경제적지원은 자세히 명문화 되지 않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제적지원을 한다'란 내용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손실복구지원의 위임근거 명시
  - 보호법 제7조는 국가가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센터가 임의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위임근거가 없어 센터업무가 공적영역이지만 자원봉사 성격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정과제로 제시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구축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바 오랜 경륜과 피해자 지원의 중심이었던 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확고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범죄피해자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관련
  - 보호법 제9조 제1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 제9조 제2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규정이 없음
  -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확대 시행을 위한 보호법 개정이 필요함

## □ 인력과 예산의 확충 필요성

- [첨부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성 참조


## □ 최근 범죄피해자지원 업무의 경향과 추세

- 2021. 10. 27. 이후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의뢰가 급격히 늘고 있음

[첨부1] 일반현황

# 일 반 현 황

2022. 1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현황

□ 법인(단체)명 :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소재지 : 서울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107호

□ 설립목적 :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혁


- 2008 1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법인 설립
- 2008 11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현재 14회 행사 개최)
- 2010 07 스마일센터 운영위탁(서울동부, 서울서부 스마일센터) 및 최초 스마일센터 개소(현재 전국 16개 스마일센터 개소)
- 2010 11 미국피해자지원연합회(NOVA) MOU 체결
- 2011 01 피해자지원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2011 11 일본피해자지원연합(NNVS) MOU 체결
- 2012 11 유럽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VSE)MOU 체결
- 2013 1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설립 5주년 기념 세미나
- 2014 10 범죄피해자 인식개선을 위한 에스원과의 제1회 "다링"(DaRing)공익 캠페인(현재 9회 행사개최)
- 2015 06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간행물 "동행" 창간호 발간(현재 15호 발간)
- 2016 04 제1회 피해자/종사자 희망수기 공모전(현재 3회 행사개최)
- 2016 1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부설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발족

- 2016 1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삼성 사회공헌상 파트너 부문상 수상
- 2017 04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센터 통합 홈페이지 개선 구축
- 2017 11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 세미나 개최
- 2018 07 전국 피해자, 종사자 어울림 전시회 개최
- 2018 11 제2회 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2020 10 제3회 희망수기 공모전 개최
- 2021 7 피해자지원시스템 전면 재구축
- 2022 7 통합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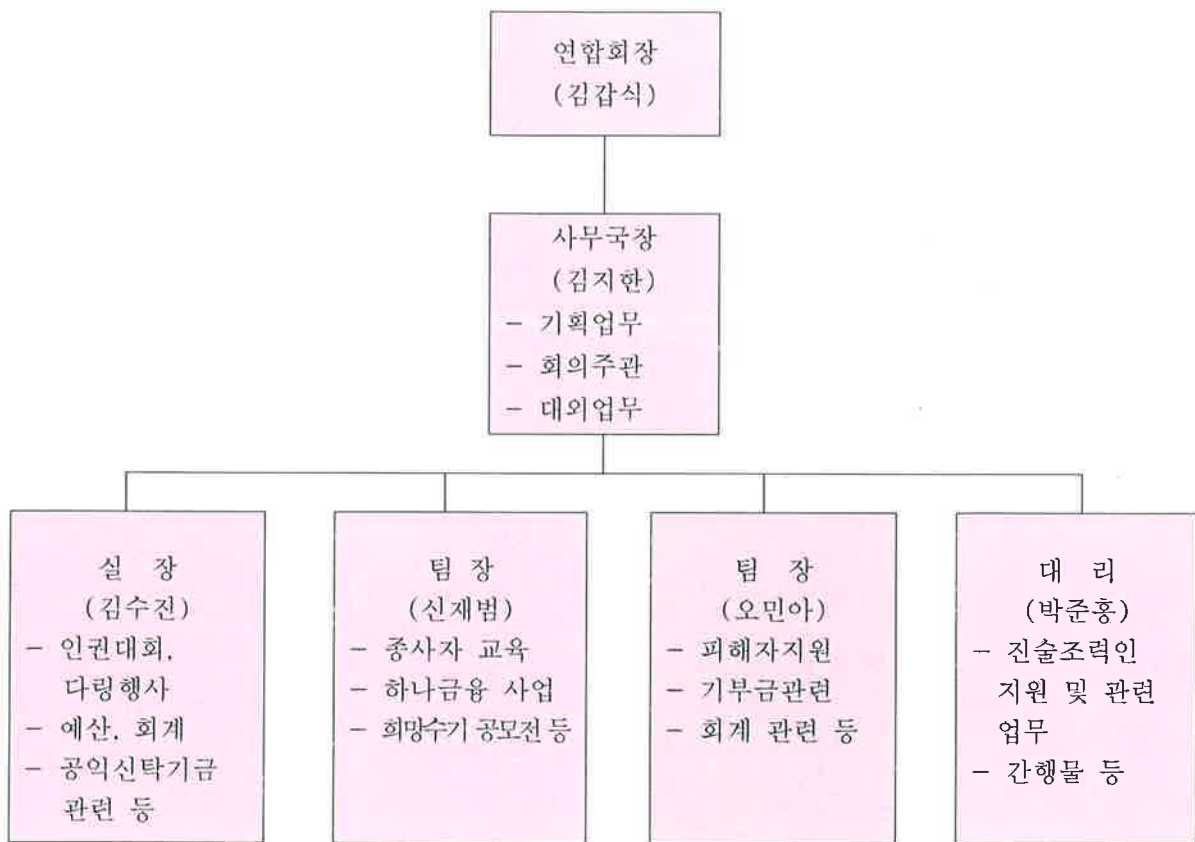
#### □ 주요사업내용

- 전국에 설립된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합업무 수행
-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공공정책 및 입법운동
- 전문상담원의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
-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소 등 운영
-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활동
- 범죄피해자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 활동
-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 진술조력인 관리 및 운영

□ 대표자

사 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김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이사장</li> <li>○ 現 동신의료재단 이사장</li> <li>○ 前 서울시 병원회 회장</li> <li>○ 前 대한병원협회 부회장</li> <li>○ 가톨릭대 명예 경영학 박사</li> </ul>	

□ 구성원 수 : 6명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소개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008. 10월에 설립되어 전국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4회째 개최, 범죄피해자 인식개선을 위한 다령 공익캠페인 9회째 개최 등 전국 행사를 통해 사회 저변에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중요성 부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지원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900여 외 부기관과 전국 센터가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형사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자지원 추진
- 피해자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정립과 일반인과 피해자의 시각에 맞춰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피해자지원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구축('2014), 피해자지원 전산 시스템 전면 보완 재구축('2021), 전국 센터 소식, 활동사례 등을 통합한 통합홈페이지 구축('2017), 통합홈페이지 전면 보완 재구축('2022)
- 피해자지원에 대한 연구기획 기능을 보완하기위해 대학교수와 센터 실무진으로 구성된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를 연합회 부설로 발족('2016)
- 아직은 취약한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차원에서 2015년부터 간행물 “동행”을 14회째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격년제로 피해자, 종사자 희망수기 공모전을 통해 생생한 감동을 일반인들에게 전달(2022 하반기 희망수기 공모전 개최예정)
-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로 태동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15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센터 15년사』 백서를 발간하여 그간 연혁, 실적, 활동 등을 총망라 수록



##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 ○ 설치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제33조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록을 거쳐 설립
-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후 김천·구미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60개 센터 설립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업

구 분	내 용
긴급구호	센터 직원 또는 전문자원봉사자가 상담, 병원후송 등 피해 초기 긴급구호 실시
신변보호	법정동행 및 수사기관 동행
치료비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관련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비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임상심리상담사 등 일정한 자격자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실비 지원
간병비등부대비용	가족이 간병하기 어려울 경우 간병비용 지원 및 원거리 시설 이용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원
긴급생계비	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
취업지원비	범죄피해자가 구직하고자 할 때나 가족 등 기타 범죄피해자가 새롭게 생계를 맡게 되어 구직해야 할 때 훈련비 및 부대비용 지원
기타	범죄피해자 상담 및 정보 제공, 법정 모니터링

- 사건 직후 경찰, 검찰 조사로 범죄피해자로 정의되어 지원 센터로 지원 의뢰되면 센터 전문인력의 신속한 현장 방문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초기 피해자의 가장 시급한 상황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실시



[첨부2] 최근 3년간 신변과 안전관련 지원 현황

## 최근 3년간(2019~2021) 신변과 안전관련 지원 현황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법정동행 (신변보호)	건수	447	414	493	1,354
	명수	312	280	287	879
	금액	4,726,300	2,969,985	3,365,700	11,061,985
수사기관동행 (신변보호)	건수	10	16	9	35
	명수	9	12	8	29
	금액	220,000	230,000	170,000	620,000
보안장치지원 (신변보호)	건수	3	5	12	20
	명수	3	5	12	20
	금액				
긴급조치 (신변보호)	건수	26	95	90	211
	명수	18	24	21	63
	금액	100,000	5,599,000	7,186,300	12,885,300
재판모니터링 (법률지원)	건수	4,516	3,673	4,150	12,339
	명수	1,629	1,340	1,414	4,383
	금액	11,123,070	7,095,500	6,323,040	24,541,610
주거지원	건수	315	320	294	929
	명수	192	184	200	576
	금액	259,322,560	305,211,513	241,161,230	805,695,303